

의안번호	제3112호
의결	2026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7. 10.

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1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7. 10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위원회 현원 반영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1조)

- (현행) 「성별영향분석법」 → (개정)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나. “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”을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”

으로 조문 제목 수정 및 하위 내용이 없는 항 삭제(안 제3조)

다.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(안 제4조제1항)

- (현행) 15명 → (개정) 11명

라. 위원회 회의 개최 요구 인원 변경(안 제6조제2항제2호)

- (현행) 10명 → (개정) 재적위원 과반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개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14691(2026. 4. 1.)호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721호
- 가) 예고기간: 2026. 3. 30.~2026. 4. 20.(21일간)
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성별영향분석법」”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)”을 “(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10명 이상의 위원이”를 “재적위원 과반수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성별영향분석법</u> 」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성별영향평가법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<u>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</u> 기능) ①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<u>위원회의 위원장이</u>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제3조(<u>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</u>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위원장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 ----- <u>11명</u>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략)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1.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2. <u>10명 이상의 위원이</u>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·④ (생략)	2. <u>재적위원 과반수가</u>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기존 시행 중인 조례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상황에 맞게
개정하는 사항으로 발의 의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
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복지지원과장 천 미 옥

□ **성별영향평가법**

제10조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27.>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7., 2025. 10. 1.>

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[본조신설 2016. 12. 20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2. 3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